

국가의 안전망: 정의와 평화의 수립에 대한 신학적 성찰*

최경석 (남서울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I. 들어가는 말

II. 국가의 인정과 발전 과정

1. 국가의 발전과정
2. 국가에 대한 신학적 입장

III. 종교개혁 시대의 정의와 평화의 수립에 대한 이해-루터를 중심으로

IV. 바르멘 신학선언 제5조에서의 정의와 평화의 수립에 대한 이해

1. 시대적 배경
2. 바르멘 신학선언 제5조의 내용
3. 바르멘 신학선언 제5조의 해석

V. 에큐메니칼 운동에서의 정의와 평화의 수립

1. 정의와 평화에 대한 패러다임 변천과정
2. 후버의 정의와 평화

VI.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0.46.08>

* 이 논문은 2019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19년 11월 30일 발표한 “국가의 안전망 설치-바르멘 신학선언을 중심으로”란 제목의 발표문은 대폭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ABSTRACT •

Safety Net of the State - A Theological Reflection to Ensure Justice and
Peace

Assistant Prof. Choi, Kyung Suk (Namseoul University)

The minimum task of the state is to ensure justice and peace. This is the basis of political theories in the logic of small government theory and large government theory. Ensuring justice and peace, a national task, was derived from the Protestant tradition. Since then, it has been used in modern constitutional order through modern enlightenment and civil revolutions. Luther believes that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Church to ensure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The role of the church's preaching and teaching is to watch over the nation to ensure justice and peace. This is the watchman's role given to the church. The fifth thesis of the Barmen Theological Declaration reiterates that the establishment of justice and peace is the task of the state. In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and facilitation, the ecumenical movement extended the establishment of justice and peace beyond the boundaries of individual states and across the globe. Huber understands justice and peace in the same category and extended it globally.

Key words: the Safety Net of the State, Assurance of Justice and Peace, the Barmen Theological Declaration, the Ecumenical Movement, Watchman's Role

I. 들어가는 말

2020년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6주년이었다. 세월호의 침몰의 원인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있다. 그 후 모든 것을 수습하는 모든 과정은 여전히 의문으로 가득 차 있다. 2019년 11월에는 헬기를 통한 구조를 미루고 선박을 통한 구조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면서 검찰은 전면 재조사에 착수한다고 표명했지만 예전에 바다에 묻혀버린 세월호처럼 모든 진실이 묻힐지 걱정이 앞선다.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는 국가에 대한 불신이란 의미가 되었다. 과연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또한 2020년 1월 말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는 노력하고 있다. 온 국민은 안전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의 최선의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다.

국가의 안전망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퍼진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이른바 팬데믹 상태에서 국내외적으로 각 국가들의 안전망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의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이해되는데, 행정을 최소화하는 ‘작은정부론’과 행정을 최대화하여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큰정부론’ 모두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선행될 국가의 임무는 정의와 평화를 수립하는 것이다. 작은정부를 옹호하는 입장도 국가와 국민 사이 계약을 통해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정의수호와 국방을 통한 평화유지를 지향한다.

정의와 평화의 수립이라는 국가의 임무는 작게 보면, 작은 정부의 입장을 묘사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복지를 표방하는 큰정부론도 정의와 평화 수립을 기본 기저로 하여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한다. 정의의 개념은 개인들의 기본권과 인권 등의 실현과 관련이 깊다. 정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실현시킬 수 있다. 평화를 위해서 국가는 안보와 국방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국가의 정의와 평화 수립의 선행 작업 없이는 국민의 복지 증진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정의와 평화의 수립은 국가의 안전망 설치의 기본 기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이 땅에서 완전한 정의와 평화의 수립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와 비슷한 것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마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의와 평화라는 추상적인 윤리 규범은 시대와 상황적으로 다양한 해석을 유발시킬 수 있다. 때문에 정의와 평화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며 그 시대에 보다 적합한 정의와 평화를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논문은 국가의 과제가 '정의와 평화의 수립'이란 것을 중점으로 삼아서, 개신교 역사 속에서 각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와 교회 사이에서 '정의'와 '평화'의 작동 체제의 발전과정을 다룬다.

이를 위해서 이 논문은 국가의 인정과 발전과정을 살펴볼 것이다.(제2장), 국가의 임무인 정의와 평화의 수립이 개신교 역사에서 어떻게 변천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루터의 입장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시대(제3장), 바르멘 신학선언(Die Barmer Theologische Erklärung)(제4장), 그리고 에큐메니칼 운동(제5장)으로 나누어 연구될 것이다.¹⁾ 왜냐하면 루터의 두정 부론은 바르멘 신학선언에 영향을 주었으며, 바르멘 신학선언의 대부분

1) 정의와 평화의 수립이란 주제는 고대 이스라엘부터 중세를 거치면서 발전했다. 그러나 본 논문은 근대국가에서의 정의와 평화의 수립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소위 서구 근대의 시작이 종교개혁, 신항로 개척, 그리고 르네상스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본다면, 종교개혁시대의 정의와 평화의 개념이 개진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물론 종교개혁시대의 다른 인물들 예컨대, 칼뱅, 츠빙글리, 시몬스, 그리고 뮌처 등이 거론되어야 하지만, 루터에 중심을 두는 이유는 루터가 당시 시대 상황에서 정의와 평화의 수립이 국가의 과제이며 교회는 이를 수립하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또한 근대 이후 천년왕국이나 종교사회주의에서도 국가의 정의와 평화의 수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바르멘 신학선언은 나치시대라는 구체적 역사상황에서 국가가 정의와 평화를 수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것이라 생각된다.

을 작성한 칼 바르트는 그의 정의와 평화의 구상을 에큐메니칼 운동에 적극적으로 개진하였기 때문이다.

II. 국가의 인정과 발전 과정²⁾

1. 국가의 발전과정

철학적 입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인간사회가 발전하면서 제도화된 산물로 본다.³⁾ 반면에 기독교 전통은 국가를 하나님의 섭리로 본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 신학 모두 국가를 인정하는 셈이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국가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 한정되며, 기독교 전통, 특히 성서에서 국가에 대한 시야는 정치적 권력으로 좁혀진다. 그럼에도 국가를 인간의 이성적 사고방식에서 구성된 하나의 지배체제 또는 하나님의 섭리로 본다면 국가가 가진 권력사용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 또는 권력은 고대 청동기 문명부터 시작되었다. 작은 국가들이 서로 합쳐지거나 흡수되면서 제국이 형성되고, 다시 분열되는 역사가 반복됐다. 서구의 역사에서 중세의 요소로 표상되는 봉건제도를 넘어서 근대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았다. 근대 국가가 형성된 이후 국가 또는 권력이 자신들의 공권력을 행사할 때, 그 정당성은 국가의 구성원들의 계약에 의해서 부여된다.

근대 국가의 발전과정에서 국가의 임무에 관해서 짧게 언급한다면, 17

2) 이 논문은 신학적 특히, 독일 신학과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일어난 국가의 개념을 논하기에, 주로 서구의 국가론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다.

3) de Wall, Heinrich, *Staat*, in; Honecker, M.(Hg.), *Evangelisches Soziallexikon*, (Stuttgart: Kohlhammer, 2001), 1523.

세기 영국의 시민혁명의 경험을 통해서 평화의 수립이 국가의 주요한 임무로 자리를 잡았다. 18세기 부르주아지 혁명을 통해서 국가에게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는 임무가 첨가되었다. 여기에 '사회계약설'의 이론을 근거로 군주제에 대항한 다양한 민주주의의 모델들이 발전하였다. 국가 구성요건으로 권력분립을 통한 국가 권력 제한, 기본권 보장, 그리고 다양한 법적 보호 장치들이 자리잡았다.

정체 체제에서 볼 때, 근대 국가는 군주 중심의 왕정으로 관료제와 상비군을 수하에 둔 소위 절대왕정시대부터 시작되었다. 18세기 후반부터 '민족'의 개념이 부각되면서 민족국가 형태로 변형되었다. 민족국가들은 국민들에게 기본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문서로 만든 성문법을 제정했다. 이후 다양한 시민혁명을 통해서 국가의 주권은 군주에게 있다는 군주제 형태의 제도에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 있다는 민주주의 형태의 제도로 변환되어 '입헌민주주의' 국가의 형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가 주권자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가진 과제 또는 임무는 역사적, 문화적 차이 속에서 상이하게 발전해 갔다.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정의와 평화의 수립은 국가의 임무들 중 기본이 되었다. 이 외에 사회적 안전망 설치와 사회적 평등을 실현시키는 것과, 또한 교통, 통신, 전력 등의 각종 삶의 편의를 위한 구조물 설치와 교육 기관의 운영 등과 같은 문화적 임무도 국가에게 부여되었다. 국가는 산업이 발달하면서 국민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임무도 가지게 되었다.

최근에는 지구화로 인해 지구에 정의와 평화를 수립하고자 개별 국가들과 국가 연합체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지구의 환경과 생태의 문제들에 대해서 국가들의 임무가 부여되고 있다. 지구화는 단순히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 전문지식의 흐름, 문화의 공유, 지구적 시민사회 운동들도 포함되고 있어 전 지구적 협력이 긴밀히 요구된다.⁴⁾ 또한 국가와 세계는 각종

신중 질병들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도 대응책을 고심하고 마련하고 있다.

2. 국가에 대한 신학적 입장

국가에 대한 개념, 표상 또는 이론들은 성서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대신에 정치적 권력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있다. 구약에서는 다윗 왕과 같은 왕국, 포로 이후 제사장을 통한 통치, 또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神政)의 개념들이 있다. 신약성서에서 국가는 정치권력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다. 로마제국에 대한 세금문제(막 12: 13-17), 산상설교에 나오는 로마법과 군사적 행위에서 비롯되는 적대세력을 향한 폭력 금지(마 5: 38 이하), 하나님의 섭리로서 국가권력(롬 13: 1 이하), 종말의 때에 등장하는 짐승으로 표현되는 국가권력(계: 13), 권력자들을 위한 기도(벧전 2: 13 이하)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에 대한 통일된 관점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럼에도 로마서 13장은 국가권력에 대한 전통적 해석으로 간주된다.

312년 콘스탄틴이 서로마의 패권자로 등극하면서 313년 동로마의 패권자 리키니우스와 협력해서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인정한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와 국가의 관계성을 새롭게 규정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제정하여 기독교 위에 군림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국가를 인정한다. 그에 따르면, 국가는 악한 죄의 경향을 가지고 있어 불의한 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가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검을 소유하는 것은 타당하다. 국가에 대한 가톨릭의 공식적 입장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견해를 따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4) Stiglitz, J. E., *Making Globalization*, 홍민경 역,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서울: 홍익출판사, 2002), 21.

국가는 자연법에 근거하여 형성되었으며 공동의 선을 목적으로 삼은 법과 정의가 국가의 척도로 간주된다.

종교개혁가들은 국가라는 직접적인 말보다는 권위에 대해서 말한다. 이들은 권력을 제도적 국가와 직접적으로 연관시킨 것이 아니라 개인과 연결시켜 권력을 말한다. 루터에게 있어서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이 통치를 위해 세우신 기관들로 기능상 구별되고 서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작센의 게오르크 공작(Herzog Georgs von Sachsen)은 루터가 성서 번역을 준비할 때 이를 금지시켰는데, 이에 루터는 “세속적인 공권에 대하여(*Von weltlicher Obrigkeit*)”를 기술하면서 국가 공권력 행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교회는 하나님에 교회에게 허락한 복음의 신학적 용법을 따르는데, 여기에 국가가 간섭하는 것을 루터는 경계했다. 마찬가지로 국가에게 주어진 율법의 정치적 용법을 교회가 떠맡아 법과 권력을 휘두르는 것도 루터는 경계했다.⁵⁾

츠빙글리는 취리히에서 기독교 시민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을 지향했다. 칼뱅의 경우 루터의 두 정부문을 인정하지만, 교회를 박해하는 권위적 공무원을 거부하고,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합의하는 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했다.⁶⁾

가톨릭과 개신교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진 30년 전쟁의 참혹함은 1648년 베스트팔렌 평화조약을 계기로 종식된다. 베스트팔렌 평화조약은 콘스탄틴 체제의 붕괴를 의미한다. 종교는 개인의 것으로 간주되었고 정치가 더 이상 종교에 간섭하지 않는 베스트팔렌 체제가 형성된 것이다. 계몽주의 시대에서 국가는 기독교의 유산으로 간주되는 인권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다양한 국가의 개념이 정립되었다. 특히 프랑스 혁명과 미국의

5) Honecker, M., *Staat*, in; ders(Hg.), *Evangelisches Soziallexikon*, 앞의 책, 1532,

6) 위의 글.

독립혁명을 통해서 국가의 권위가 신으로부터 부여되는 왕권신수설이 사라지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론이 부각되었다.⁷⁾

20세기 초반의 신학은 전체주의 국가 또는 제국주의 국가에 저항했다. 히틀러의 독일 전체주의에 저항한 바르멘 신학선언은 루터의 두 정부론과 맥을 같이 하며 국가와 교회의 경계를 분명히 그었다. 물론 독일 개신교의 대부분은 신루터주의의 두 영역론을 제시하면서 두 영역의 고유성을 인정하며 히틀러의 전체주의를 인정했다. 반면에 분회퍼는 정치적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지상에서의 대리적 기능으로 이해했다.⁸⁾ 바르멘 신학선언의 작성자 칼 바르트는 그리스도의 왕권통치라는 시각에서 관계유비적으로 국가를 설명한다. 하나님의 유비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서 발휘하였기에 세상의 권력인 국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국가는 하나님과 관계 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비슷한 것을 행사해야하고 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국가에게 압력을 가한다.⁹⁾ 독일 개신교회(EKD)는 자유와 법치 국가의 확립 속에서 민주주의의 국가형태의 실행을 위해서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입법제정을 강조한다.¹⁰⁾

지구화가 진행되면서 개신교도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해서 지구적 정의와 평화의 수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에큐메니칼 운동, 특히 “생활과 노동(Life and Work)” 운동은 20세기 초,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혹함을 극

7) 보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 강원돈, “세속국가의 헌정질서와 교회의 공론 작업: 루터의 율법설교에 대한 해석에 근거하여”,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40(2018), 18-21.

8) Bonhoeffer, D., *Ethik*, 손규태 역, 『기독교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4), 290.

9) Honecker, M., *Staat*, 1534.

10) EKD, *Evangelische Kirche und freiheitliche Demokratie, Der Staat des Grundgesetzes als Angebot und Aufgabe*,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85).

복하기 위해서 세계대회를 개최하고 지구의 정의와 평화 수립을 위해서 고민했다. 이 흐름이 이어져 1948년 제1차 암스테르담 세계교회협의회를 시작으로 “책임사회론”, “정의롭고 참여적이고 지탱 가능한 사회(Just, Participatory and Sustainable Society, 이하 JPSS)”, 그리고 “정의, 평화 그리고 창조질서의 보전(Justice, Peace and Integrity of Creation, 이하 JPIC)”이라는 세계교회협의회 의 패러다임이 변천되었다. 이런 변천과정 속에서 지구의 정의와 평화 수립을 위해서 에큐메니칼 운동은 노력하고 있다.¹¹⁾

III. 종교개혁 시대의 정의와 평화의 수립에 대한 이해-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시대, 특히 루터에게 있어서 국가의 임무로서 정의와 평화 수립에 대한 이해는 두 정부론과 관계가 깊다. 루터는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를 구분하나,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세우는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와 조응한다고 본다. 정의와 평화의 수립에 대한 루터의 신학적 출발점은 그의 신학적 기본명제인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받는 이신칭의로 볼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로 고백하는 믿음 속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자유를 얻는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에서 자유와 의로움을 얻은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타인을 섬기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믿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함 속에서 다른 이웃들과 연대하여 공동체의 안녕과 정의를 실현하는 봉사의 길을 걷는다.¹²⁾

11)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사회윤리적 패러다임의 흐름에 대해서는 손규태, 『개신교 윤리사상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455-480, 또한 강원돈, “에큐메니칼 사회사상의 전통에서 본 노동 이해”, 『지구화 시대의 사회윤리』, (파주: 한올아카데미, 2005), 159-188을 참조하라.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길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이웃 사랑을 위해 루터는 율법설교를 활용한다. 루터는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교회와 세속국가가 서로 협력함을 강조한다.¹²⁾ 국가에서 각종 부당한 경제활동, 고리대금, 매점매석 등을 통해서 정의를 유린될 경우, 교회는 경제 정의를 확립하도록 설교를 하고 가르쳐야 한다. 루터는 경제적으로 긴박한 상황 속에서 고리대금과 매점매석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항하는 사람들이며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비판한다.¹⁴⁾ 아울러 국가가 법률을 무시하면서 자의적 폭정을 자행할 경우, 교회는 이를 억제하도록 국가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루터는 국가의 임무 중 하나로서 평화의 수립을 강조한다. 주지하듯이, 평화를 수립하기 위해서 국가의 공권력이 사용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예는 1524년과 1525년 사이 농민반란에 대한 루터의 견해다. 농민반란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배치되며, 농민군이 약탈과 학살을 일삼을 때, 영방군주들의 군대를 통해서 진압할 것을 루터는 요구했다.¹⁵⁾ 공동체의 평화를 파괴하는 죄인들을 구금하고 악에 대해서는 경계함으로써 국가의 평화가 수립될 수 있다고 루터는 주장한다.

루터 신학의 기본명제인 이신칭의로부터 비롯된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이웃 사랑과 이웃에 대한 봉사, 즉 공동체 내부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조응되는 정의를 세우는 것이고 공동체를 평화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루터의 관심사들 중 하나는 “교회가 국가와 세계에서 정의와

12) 이 주장을 위해서, Brakelmann, G., *Zur Arbeit geboren? Beiträge zu einer christlichen Arbeitsethik*, (Bochum: SWI, 1988), 35.

13) 강원돈, “세속국가의 헌정질서와 교회의 공론 작업”, 앞의 글, 32.

14) Luther, M., *WA (Weimarer Ausgabe)* 6, 36. (이하 *Weimarer Ausgabe*는 *WA*로 약칭)

15) Luther, M, *WA* 18, 357.

평화를 수립하는 데 책임¹⁶⁾을 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설교하고 가르쳐서 국가와 사회가 정의와 평화를 수립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는 교회에게 주어진 이른바 파수꾼의 역할이다.¹⁷⁾

IV. 바르멘 신학선언 제5조에서의 정의와 평화의 수립에 대한 이해

1. 시대적 배경

바르멘 신학선언 제5조는 정의와 평화의 수립의 원칙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정확히 천명하고 있다. 그 전에 바르멘 신학선언의 배경을 간략히 살핀다면, 1933년 1월 30일 독일의 히틀러가 이끄는 국가사회주의당(Nationalsozialistische Partei)인 나치당이 정권을 잡았다. 독일 개신교는 나치당에서 새로운 사회가 건설될 것이라는 희망을 보면서 나치당을 지지했다. 아울러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Die Weimarer Republik)의 자랑인 기본권에 관한 헌법들이 폐지되었다. 독일 개신교는 히틀러에게 매수되어 독일 제국교회로 통합되어 독일 개신교의 정치적 저항이 막혀버렸다.¹⁸⁾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독일 개신교 내부에서 반성과 개혁의 목소리가 있었다. 칼 바르트는 교회가 가진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했으며, 몇몇의 목사들과 구성원들이 바르트에 동조하여 1934년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독일 서부의 작은 도시인 부퍼탈(Wuppertal)의 바르멘

16) 강원돈, 앞의 글.

17) Luther, M, *WA 51*, 422, 7ff.

18) Jähnichen, T., *Vom Industrieuntertan zum Industrieburger, Der soziale Protestantismus und die Entwicklung der Mitbestimmung (1848-1955)*, (Bochum: SWI, 1993), 304.

(Barmen)에 모여서 고백교회 노회(Bekenntnissynode)를 개최했다. 노회의 마지막 날에 공동으로 신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의 작성자는 바르멘이었다. 특히 교회와 국가의 임무와 경계에 대해서 바르멘 신학선언 제5조가 잘 표명하였다. 제5조는 국가의 임무가 정의와 평화를 수립하는 것임을 재천명하고 있다. 정의와 평화의 수립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바르멘 신학선언 제5조를 분석할 것이다. 제5조는 성서구절부터 시작해서 세 부분으로 분류된다.

2. 바르멘 신학선언 제5조의 내용

바르멘 신학선언 제5조는 국가에 대한 전통적 성서구절인 로마서 13장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17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을 존대하라”를 인용하면서 시작한다. 제5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국가의 임무, 국가에 대한 교회의 비판과 간섭, 그리고 교회와 국가의 관계성이다.

신학선언 제5조는 이어서 국가의 임무를 성서적 표현을 따라서 설명하고 있다: “성서는 우리들에게 국가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아직 구원 받지 못한 세상 속에서, 교회도 역시 그 세상 속에 존재하는 바, 인간의 통찰과 능력의 분량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여 정의와 평화를 수립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¹⁹⁾

정의와 평화를 수립하는 국가의 임무가 제시된 이후 교회의 임무에 대해서 설명한다: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감사 안에서 하나님의 섭

19) “Die Schrift sagt uns, dass der Staat nach göttlicher Anordnung die Aufgabe hat, in der noch nicht erlösten Welt, in der auch die Kirche steht, nach dem Maß menschlicher Einsicht und menschlichen Vermögens unter Androhung und Ausübung von Gewalt für Recht und Frieden zu sorgen.” Burgsmüller, A. und Weth, B., (hg.), *Barmer Theologische Erklärung, Einführung und Dokumentation, These V*,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3), 38.

리의 선하심을 인정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상기시키고 그와 더불어 통치자들과 피통치자들의 책임을 상기시킨다. 교회는 하나님을 통해서 전적으로 나타난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순종한다.”²⁰⁾

교회가 국가에 대한 비판과 감시에 대한 신학적 설명 이후, 국가와 교회의 관계성을 설명한다: “우리는 마치 국가가 그 특별한 임무를 넘어서 인간 생활의 유일하고 전적인 조직이 되고, 그래서 교회의 사명까지 실현해야 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한다. 우리는 마치 교회가 그 특별한 임무를 넘어서 국가적인 형태, 국가의 과제와 국가의 위엄을 취하고, 또 그리하여 자신이 유일한 국가의 기관이 되어야 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한다.”²¹⁾

3. 바르멘 신학선언 제5조의 해석

바르멘 신학선언 제5조는 독일 신학에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볼프강 후버(Wolfgang Huber)는 기독교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제5조를 분석하고 있다. 후버의 분석에 기대어 글을 개진한다면, 제5조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성을 규정한다. 국가의 권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

20) “Die Kirche erkennt in Dank und Ehrfurcht gegen Gott die Wohltat dieser seiner Anordnung an. Sie erinnert an Gottes Reich, an Gottes Gebot und Gerechtigkeit und damit an die Verantwortung der Regierenden und Regierten. Sie vertraut und gehorcht der Kraft des Wortes, durch das Gott alle Dinge trägt”, 위의 책.

21) “Wir verwerfen die falsche Lehre, als solle und könne der Staat über seinen besonderen Auftrag hinaus die einzige und totale Ordnung menschlichen Lebens werden und also die Bestimmung der Kirche erfüllen.

Wir verwerfen die falsche Lehre, als soole und könne sich die Kirche über ihren besonderen Auftrag hinaus staatliche Art, staatliche Auftrag und staatliche Würde aneignen und damit selbst zu einem Organ Staates werden.”, 위의 책.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국가 또는 국가의 권위에 대한 존중은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²²⁾ 국가의 기능 특히 윤리적 기능은 신학선언 5조의 첫 부분부터 표현된다. 국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기관이다. 그래서 국가는 권력을 독점하고 국가의 권력 행사는 인간의 통찰과 능력에 따라서 허용된다. 국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에게 하나님은 국가에게 임무를 부여한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의와 평화다. 하나님은 국가가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군림하는 기능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기능을 부여한 것이다.

바르멘 신학선언 제5조에서 천명하는 국가의 임무는 “정의와 평화를 보호”하는 것이다. 정의와 평화가 보호되는 곳은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이다. 때문에 국가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위기 상황일 경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는 악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해야 하며 인간의 시시비비를 따져야 한다. 국가는 유린된 정의와 깨어진 평화를 어떻게 되돌리고 보호할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 속에서” 국가는 정의와 평화에 관심을 가지는 한에서 권력을 사용하고 이를 목적으로 삼는 모든 일에 권력을 독점하는 합법적 기관이다. 이렇게 볼 때, 제5조는 루터의 율법의 정치적 용법에 충실하다. 율법을 “인간의 통찰력과 능력의 분량에 따라” 이성적으로 해석해서 현실에 적용시키는 것의 핵심은 정의와 평화를 수립하는 것이다.

인간들의 사회에서 보호되고 장려되어야 할 정의와 평화의 수립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국가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심인지를 아는 것이 교회가 가진 임무다. 이를 위해서 교회

22) Huber, W., *Folgen christlicher Freihei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3) 97.

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에 대한 교회의 사명이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통치자들과 피통치자들의 책임을 상기시켜야” 한다는 점을 천명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며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는 교회가 국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할 수 있는 기관인 것임을 신학적으로 밝힌다. 이렇게 볼 때, 제5조는 루터의 율법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국가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할 수 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재천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루터의 율법설교를 통해서 부여된 세상에 대한 교회의 파수꾼 역할에 충실한 제5조는 교회와 국가의 일을 혼동하거나, 교회가 국가를 대신하거나, 그리고 국가가 교회를 대신하고 서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신학적 원칙을 제시한다. 하나가 다른 하나의 일을 대신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신학적 원칙인 것이다. 당시 독일 나치 정부가 교회의 일을 대신하고, 독일 기독교는 나치 정부의 일부가 되어 교회와 국가를 서로 분리된 두 영역으로 나누고, 국가에게 부여된 고유한 법칙에 의해서 히틀러의 전체주의를 신학적으로 옹호한 신루터파의 학자들에게 제5조는 경고한다.

바르멘 신학선언 제5조를 루터의 견해와 관련해서 간략히 정리하자면, 종교개혁 전통에서 비롯된 정의와 평화의 수립의 원칙은 바르멘 신학선언 제5조에서 재천명되었다. 루터의 두 정부론은 정의와 평화의 수립의 원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수단은 칼과 율법이다. 이른바 율법의 정치적 용법이다. 하나님은 국가의 질서를 확립하고 정의와 평화를 수립하기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율법을 부여했다. 국가 질서의 확립, 정의와 평화의 수립을 위해서 국가는 율법을 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칼로써 응징할 수 있다. 율법의 정치적 용법은 법률 제정

으로 구체화된다. 국가의 임무는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법률을 제정하고 이 법률은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는 데 이바지한다.²³⁾ 교회는 국가가 정의와 평화를 수립하는 데 교회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는 루터의 율법 설교에 잘 나타나 있다. 국가가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도록 교회는 파수꾼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다.²⁴⁾

V. 에큐메니칼 운동에서의 정의와 평화의 수립

루터의 이신칭의에서 비롯되고 이웃 사랑의 영역은 두 정부론을 통해서 국가 또는 사회로 자리매김했고, 교회는 국가 또는 사회가 정의와 평화를 수립하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바르멘 신학선언 제5조는 독일의 나치당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다시금 국가의 역할이 정의와 평화를 수립하는 것임을 천명했다. 루터와 바르멘 신학선언 제5조가 말하는 정의와 평화의 수립의 현장이 국가 또는 사회라면 에큐메니칼 운동은 그 영역을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시켰다.

1. 정의와 평화에 대한 패러다임 변천과정

정의와 평화는 에큐메니칼 운동에서도 사회적 안전망 설치를 위한 중요한 개념이다. 19세기 중반 기술의 발전과 진보는 국제의 교역량을 증가시켰고, 서구의 열강들은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제국주의를 팽창시켰다. 교회도 이런 흐름에 편승하면서 적극적 선교활동을 시작했다. 이런 지구화가 시작되면서 지구 도처, 특히 선교지에서 사회문제들이 발생했다. 이런 문제점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시작되었다.

23) 강원돈, “세속국가의 헌정질서와 교회의 공론 작업”, 31.

24) 위의 글, 33.

그 첫 번째 움직임은 1910년 제1차 ‘세계선교대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에서 인간의 안녕과 평화의 확고함을 천명하면서 시작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기독교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진 이후, 에큐메니칼 운동은 교회의 상호협력을 절실히 느꼈다. 특히 사회윤리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1927년 ‘생활과 노동’운동도 제1차 세계대회를 개최했다. 이 같은 초창기 에큐메니칼 운동의 두 흐름은 지구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고심했다.

그러나 지구는 참혹한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다. 지구적 평화 수립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등장하여 1948년 국제연합의 창설로 결실이 맺혔다. 이런 지구적 결실에 조응하여, 에큐메니칼 운동은 지구적 평화를 위해서 흩어져 있던 개별 운동들을 통합하여 1948년 제1차 세계교회협의회를 개최했다. 제1차 세계교회협의회는 ‘책임사회’의 구상을 표명하면서, 전쟁을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한 인간들의 무질서와 무책임의 결과로 보았다. 책임사회 구상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의 권리는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확립하는 것으로 이는 그리스도의 왕권통치와 조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책임적 존재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요구해야 한다. 국가는 이 권리를 모든 사람들이 가지도록 이바지해야 한다.

‘책임사회’ 구상은 빠르게 진행되는 지구화를 경험하면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진보를 희망했다. 그러나 ‘책임사회’ 구상은 급속한 지구화의 진행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것은 지구적 빈부의 격차가 심각해지는 소위 남북문제였다. 대부분의 제3세계의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빈곤상태가 사람들에게 지구적 정의를 갈망케 했다. 냉전은 세계 평화를 위협했다. 이런 측면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은

‘책임사회’ 구상을 일부 수정하고 발전시켜 1968년 제4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에서 ‘정의롭고 참여적이고 지탱 가능한 사회’(JPSS)로 방향을 잡았다. JPSS에 따르면, 기술적 진보의 혜택에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도 참여하는 것이 정의다. JPSS는 이 정의가 미래 사회에서도 지속되기를 갈망하는 사회윤리적 구상이었다.

기술의 낙관적 진보 속에서 나오는 낙수효과의 혜택을 기다린 세계경제는 1970년대 후반 영국과 미국에서의 경제 침체로 새로운 방향성이 필요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노선이 바로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에큐메니칼 운동도 1983년 제6차 세계교회총회에서 ‘정의, 평화 그리고 창조질서의 보전(JPIC)’의 공의회 과정²⁵⁾으로 방향성을 수정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JPIC의 공의회 과정은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정의’와 ‘평화’가 공식적으로 들어 있는 패러다임이다. JPIC의 공의회 과정에서 정의와 평화의 수립은 이제 단순히 인간 사회를 넘어서 모든 생명체를 포함한 전 지구로 확산된다. 정의는 “동료 피조물들 사이의 신실하고 공감을 나누는 동등한 관계”²⁶⁾로 묘사된다. 평화 또한 피조물의 보전을 위한 평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JPIC의 공의회 과정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은 각 교회에게 생태학적 지향을 중점으로 삼아서 정의로운 세계 질서와 폭력 없는 문화를 위한 구체적인 책무를 요구한다.²⁷⁾

25) 공의회 과정은 그리스도인들 또는 교회의 운동에 속하는 실현 가능한 방법론이다. 로마 가톨릭의 공의회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나, 에큐메니칼 운동의 공의회 과정은 공의회가 아닌 공의회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Raiser, K., *Schritte auf dem Weg der Ökumene*. (Frankfurt am Main: Lembeck, 2005) 354를 참조하라.

26) 강원돈, “에큐메니칼 사회사상의 전통에서 본 노동 이해”, 앞의 책, 181.

27) 위의 책, 184.

2. 후버의 정의와 평화

에큐메니칼 운동의 연장선에서 지구적 정의와 평화 수립에 대한 연구로는 볼프강 후버가 적절하다고 본다. 국가가 정의와 평화를 수립하기 위해서 교회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루터적 전통을 계승한 후버는 국가와 교회의 기본 방향을 “정의로운 평화”의 윤리로 설명한다.²⁸⁾ 후버의 “정의로운 평화”의 윤리구상은 독일 개신교가 지향하는 기본 노선이 되었다.²⁹⁾ 우선 그는 폭력적인 것과 비폭력적인 것을 인정하면서 폭력을 최후의 수단으로 보았다. 평화를 위해서는 폭력사용이 가능하다. 법질서의 재건을 위한 폭력이 용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폭력 사용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후버는 비록 폭력을 인정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폭력이다.

후버의 “정의로운 평화”의 윤리는 사회의 정의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정의와 평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법과 정치의 도움을 통해서 실현 가능하다. 평화의 수립은 폭력의 최소화, 충분한 자유, 그리고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통해서 관철될 수 있다. 여기에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자원의 분배와 같은 정의와 연관되어 있다. 폭력의 최소화를 통한 정의와 평화의 보장은 강제적인 법규범을 통해 관철되어야 한다. 지구화 시대 국제적 분쟁과 국가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국제법의 역할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집단 안보를 통한 정의와 평화를 증진시키는 것, 정치 권력이 평화와 정의를 증진시키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 그리고 정의로운 평화윤리를 통해서 정치 권력이 정의와 평화를 증진시키도록 교회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³⁰⁾

28) 이를 위해서 김성수,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회의 책임”,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44(2019) 206-214.

29) 위의 글, 207.

30) 위의 글, 211-214.

지구화가 진행되고 촉진되면서 정의와 평화의 수립은 개별 국가만의 차원을 넘어섰다. 지구의 전역에서 정의와 평화의 수립이 요구되었기에, 에큐메니칼 운동은 그 도전 속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속에서 지구적 정의와 평화는 시급한 문제였으며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책임사회’ 구상은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정의의 권리를 가질 것을 천명했다. JPSS는 가난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까지도 기술의 진보라는 혜택에 참여하는 것이 정의라 했으며, JPIC는 정의와 평화의 수립이 전 지구의 모든 생태차원에서 실현 가능하도록 교회가 공의회 과정을 견도록 촉구했다. 이를 발전시킨 후버는 정의와 평화를 같은 범주로 이해하며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시켰다.

VI. 나가는 말

2014년 세월호 참사를 통한 국가의 안전망에 대한 논의나 지금까지 발생하는 코로나19로 인한 각 국가들의 안전망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방안들은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기본이 되는 정의와 평화의 수립이 개신교 전통에서 발전되었음을 이 논문이 다뤘다. 국가의 최소한의 안전망 설치는 정의와 평화의 수립에 기초를 하고 있다. 정의와 평화의 수립은 종교개혁의 전통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근대 계몽주의와 시민 혁명들을 통해서 근대 국가의 헌정질서에 통용되고 있다. 정의와 평화의 수립은 바르멘 신학선언 제5조가 국가의 임무로 재천명하였고 에큐메니칼 운동에서도 교회가 사회에 책임을 지는 공의회 과정에 중요한 신학적 과제로 간주하고 있다. 최근에는 볼프강 후버에 의해서 정의와 평화의 수립은 한 국가의 임무가 아닌 지구화 시대의 범국가들의 국제적 임무로 전환되고 있다.

안전사회 또는 국가의 안전망을 위한 정의와 평화의 수립을 위해서 교

회는 루터의 율법설교에서 파생된 교회의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정의와 평화의 수립을 위한 교회의 파수꾼의 역할은 바르멘 신학선언 제5조에서 재천명되었으며, 후버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사정은 에큐메니칼 운동에서도 마찬가지다. 지구화 과정이 촉진되는 상황 속에서 생태계를 포함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정의와 평화의 수립을 위한 노력은 교회의 파수꾼의 역할로 이해될 수 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한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세상의 일들을 긍정하고, 정확히 확인하고, 궁극적인 것의 빛에서 궁극 이전의 것을 찾고 제시해야 한다.

참고문헌

- 강원돈, “에큐메니칼 사회사상의 전통에서 본 노동 이해”, 『지구화 시대의 사회윤리』, (파주: 한올아카데미, 2005)
- 강원돈, “세속국가의 헌정질서와 교회의 공론 작업: 루터의 율법설교에 대한 해석에 근거하여”,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40(2018), 11-47.
- 김성수,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회의 책임”,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44(2019), 199-221.
- 손규태, 『개신교 윤리사상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Bonhoeffer, D., *Ethik*, 손규태 역, 『기독교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4)
- Brakelmann, G., *Zur Arbeit geboren? Beiträge zu einer christlichen Arbeitsethik*, (Bochum: SWI, 1988)
- Burgsmüller, A. und Weth, B., (hg.), *Barmer Theologische Erklärung, Einführung und Dokumentation, These V*, (Neukirchen-Vluyn: Neukirchner Verlag, 1983)
- de Wall, Heinrich, *Staat*, in; Honecker, M.(Hg.), *Evangelisches Soziallexikon*, (Stuttgart: Kohlhammer, 2001), 1523-1529.
- EKD, *Evangelische Kirche und freiheitliche Demokratie, Der Staat des Grundgesetzes als Angebot und Aufgabe*,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haus, 1985)
- Jähnichen, T., *Vom Industrieuntertan zum Industrieburger, Der soziale Protestantismus und die Entwicklung der Mitbestimmung (1848-1955)*, (Bochum: SWI, 1993)
- Honecker, M., *Staat*, in; ders(Hg.), *Evangelisches Soziallexikon*, (Stuttgart: Kohlhammer, 2001), 1529-1536.
- Huber, W., *Folgen christlicher Freiheit*, (Neukirchen-Vluyn: Neukirchner Verlag, 1983)
- Luther, M., *Eyn Sermon vom Wuher, WA (Weimarer Ausgabe) 6*, 36. (이하 *Weimarer Ausgabe*는 *WA*로 약칭), 36-60.

_____, *Wider die räberischen und mörderischen Rotten der Bauern*, *WA 18*, 357-361.

_____, *An die Pfarrherrn wider den Wucher zu predigen, Vermahnung*, *WA 51*, 325-330

Raiser, K., *Schritte auf dem Weg der Ökumene*. (Frankfurt am Main: Lembeck, 2005)

Stiglitz, J. E., *Making Glovbalization*, 홍민경 역,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서울: 홍익출판사, 2002)

논문투고일: 2020년 02월 29일

심사개시일: 2020년 03월 12일

게재확정일: 2020년 04월 18일

• 국 문 초 록 •

국가의 최소한의 과제는 정의와 평화의 수립이다. 이는 작은정부론이나 큰정부론의 논리 속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국가의 임무다. 국가의 최소한의 안전망 설치는 정의와 평화의 수립에 기초를 하고 있다. 정의와 평화의 수립이란 국가의 임무는 개신교 역사 속에서 파생되어 근대 계몽주의와 시민 혁명들을 통해서 근대 국가의 헌정질서에 통용되고 있다. 루터는 교회가 국가와 세계에서 정의와 평화를 수립하는 데 책임을 다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가졌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설교하고 가르쳐서 국가와 사회가 정의와 평화를 수립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는 교회에게 주어진 이른바 세상에 대한 파수꾼의 역할이다. 바르멘 신학선언 제5조는 나치의 폭정에 대항하여 교회와 국가의 임무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국가의 임무가 정의와 평화의 수립이란 것을 재천명한다. 지구화가 진행되고 촉진되면서 정의와 평화의 수립은 개별 국가만의 차원을 넘어섰다. 지구의 전역에서 정의와 평화의 수립이 요구되었기에, 에큐메니칼 운동은 그 도전 속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다. ‘책임사회’ 구상은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정의의 권리를 가질 것을 말한다. 이를 발전시킨 후버는 정의와 평화를 같은 범주로 이해하며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시켰다.

주제어: 국가의 안전망, 정의와 평화의 수립, 바르멘 신학선언, 에큐메니칼 운동, 파수꾼의 역할